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65호
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5조(영업의 등록 등)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(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2년 08월 18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
2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2. 9. 20. (화요일)
3. 법적 근거 :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
4. 직권말소 예정 내역

업종	업소명	영업자	소재지	직권말소 사유	내용
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 업체 2000개소 (명단 별첨)					

5. 고지사항 :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문의사항 :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(☎02-2640-1445, 5004~5006)